
공익소송의 실재

-장애인활동지원소송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소아

동행의 미션



지역에서

존엄과 권리를 상실한 이들의 목소리를

법의 언어로 전달한다

=>2015. 5. 14. 설립

지역 유일의(그러나 유일하고 싶지 않은)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 단체
www.companion-Ifpi.org 인스타그램/유튜브!!! 팔로우,구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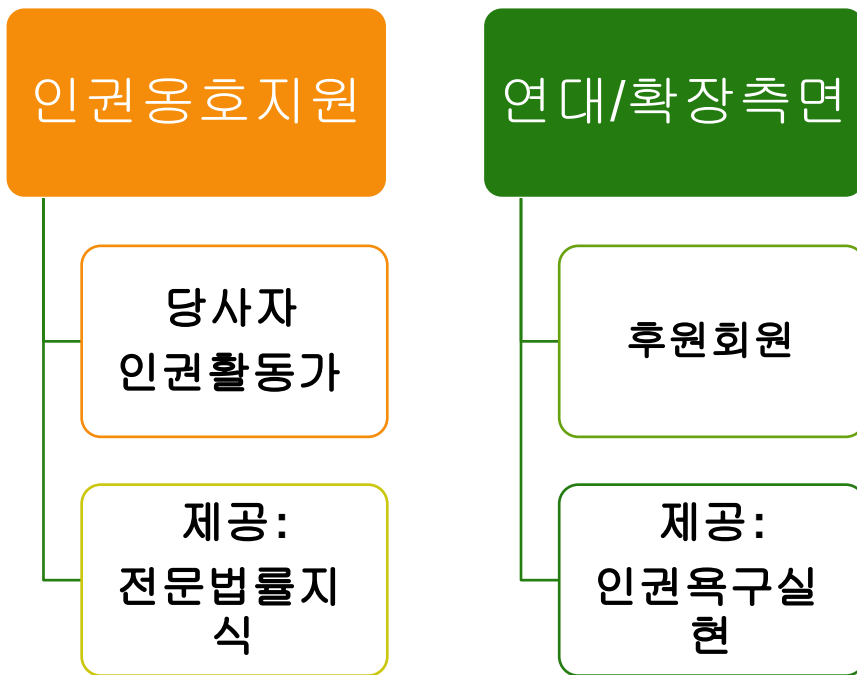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방식

- 수익모델
 - 장단점

- 비수익모델
 - 장단점

=> 더 자신 있고, 내게 더 맞고, 더 지속가능한 것으로
=> 전업으로 한다, 함께한다

동행의 수익?모델 - 후원금 우선



동변상연 - 변론들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당사자와 활동가들



장애는 힘들어도
생은 빛나야 되지 않
겠습니까?

떨어지는 꽃잎도 바람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꿈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황신애





동행상연 - 변론들



일제강제노무동원소송 - 양금덕할머니



CNRP 한국 대표 V



장애인노동력착취 사건 재판 1회 기일 후 목포지원



동변상연 -판결문 없는 작은 승소들



목포출입국관리사무소 E-7 노동자와 대응



여수 고용노동청 앞 노동자들과

Thank you for helping me and my baby. I did not read a paper first, but I just look at them now. Thank you so much for what you did for me and my baby. May God bless you in return.

MMS 오후 4:55

God bless you all.

광산구에 사는
라이베리아 엄마, 아이

동변상연 -기자회견들



실태조사/연구용역

2021 전남
농어업이주노동자실태조사



2019 광주이주노동자실태조사



2022 영전근로자
실태조사



동변상연 -협력사업 협력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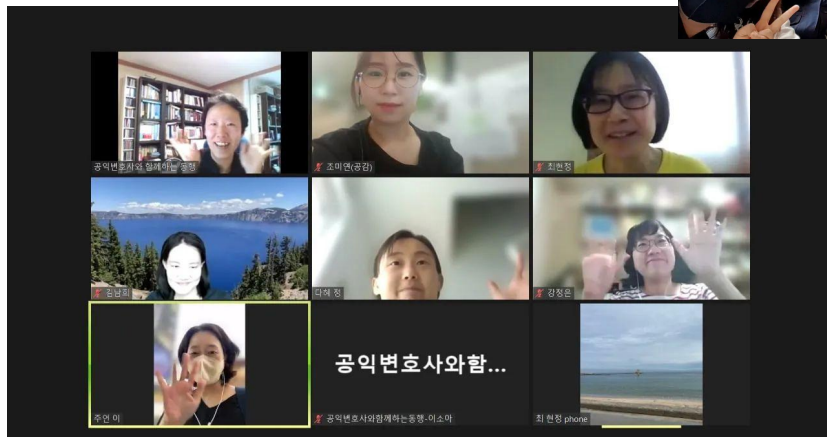
○ 협력사업 :

- 이주노동자 권리찾기
- 인권그림전시회 (2019, 2020) 및 시나페 합동 공연
- 강제징용 바로알기 시리즈 영상제작
- 고용허가제 매뉴얼 문제점 국회토론회
- 통역인 법률용어 교육
- 광주 NPO 법률지원단 양성 교육
- 농어업이주노동자 근로실태 토론회
- 예비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토론회
-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협력소송

- 장애인활동지원법 대응 공동대리인단
- 우리도버스타고여행가자 공동대리인단
- 염전노동력착취사건 공동대리인단
- 일제강제노무동원 손배청구 공동대리인단
- 고 흥정운군 국가배상청구소송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 공동대리인단

우리는 연결될 수록 강하다 - 연대





참여 연대 단위

- * **인권활동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아시아시스넷, 전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광주 민중의집, 광주여성민우회, 광주 혐오문화대응네트웍, 난민네트워크, 선원이주노동자네트워크, 광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언니네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실로암 사람들,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 광주인권교육센터 활짝,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문화콘텐츠그룹 잇다, 활동가 연극모임 시나페, 인신매매TF (20)
- * **법조:** 공익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수자인권위원회, 공익소송지원단, 광주지방변호사회 다문화법률지원단, 노인빈곤연구팀, 대한변협 프로포노 TF, 민주노총법률원 광주사무소, 이주사례연구모임, 광주지방 여성변호사회(10)
- * **예비 법조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연합(인연) (3)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공동대리인단



공익인권소송의 시작

- 공익인권소송의 기획 : 집단 지상의 힘으로

- 문제해결 위한 전략 분석:
 - 인권위 진정, 차별구제, 민사소송, 입법활동? 등등
 - 소송의 결과가 발목 잡히나?
 - 소송과 이슈파이팅, 소송과 캠페인
 - 소송과 정치
 - 소송으로 다른 운동이 위축되는가?
 - 무엇보다도 당사자 : 원하는가, 협조가능한가, 소송요건을 갖추었는가



공익소송의 시작

- 공익소송의 목표
 - : 소 제기 자체가 운동 방식(월성수명연장허가처분무효확인)
 - : 공익적 의미 갖는 피해자 권리 구제
 - 소송이 운동이 될 수 있는가?
- 공익소송의 4주체
 - : 당사자, 활동가(단), 연구자(전문가)(단), 변호사(단)

공익소송의 시작



-변호사(단)의 구성

쟁점이 적은 경우

쟁점이 많은 경우 : 저년차, 중년차, 고년차



공익인권소송의 시작

- 법률적인 해결 방법 리서치 : 인권위 진정, 보전처분, 전심절차, 집행정지, 민/형사, 헌법소원
- 수임료, 소송비용 문제
- 집단소송시 발생하는 실무적 문제들 : 위임, 채권양도

끝까지 버틴 당사자 황신애





2020. 6. 14.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2020. 봄- 대리인단 회의



지난 경과

- ~~- 2016. 9. 6. 당사자 A,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서 제출~~
- 2016. 9. 말. 광주광역시 북구청 변경신청 거부
- 2016. 12. 2. 북구청장을 피고로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3137)
- 2017. 3. 위 소송 중 소송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2017. 7. 광주지방법원 문제의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17헌가2)
- 2020. 12. 23. 헌법불합치 결정(잠정적용, 2022. 12. 31. 기한)
- 2020. 4. 15. 위 행정소송(광주지방법원2016구합13137) 원고 청구인용(북구청 처분 취소 결정)
- 2020. 5. 중순 북구청 앞 기자회견, 당사자 서비스 제공 촉구
- 2020. 6. 당사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시
- 2021. 9. 광주 북구청, 서구청 상대 추가소송
- 2022. 5. 개약

새로운 기획소송들



2023 용기의 선택 : 다시 위헌제청됨!

2026 두자와 딸의 선택 : 80넘은 할머니도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해!



기초 사실 관계

- 당사자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로 인해 장애를 가진 사람
- 관련 법률 : 장애인활동지원법(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서비스 관련 법)
- 문제되는 법률 조항 :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먼저 받고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자체를 박탈
- 대리인단 : 민변 소수자위 변호사들(여러 공익단체에 소속됨)

제청신청인들은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중증 장애인입니다.

신청대상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다릅니다

| | 장애인활동지원 | 노인장기요양 |
|-------|--|--|
| 목적 | 자립 (일상+ 사회) 생활지원) | 일상(신체+가사) 생활 지원 |
| 신청자격 | 6-64세의 1~3급 장애인 | 65세이상 노인, 65세미만 노인성질환자 |
| 급여내용 | 신체 활동, 가사활동, 사회 활동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급여 :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대여 등 ◦ 시설급여, 현금급여 (가족·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 최대급여량 | 1급 월 622만원(약 410시간) | 재가급여 1등급 : 125만원 (108시간) |
| 본인부담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의료수급자 : 무료 * 차상위: 2만원 *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여: 2.5~10.5만원 - 추가급여 : 0.2~12.6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부담 비율 : 일반 15%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감경·의료급여(중위소득50%이하) : 6~9% ◦ 실제 본인이 지급하는 비율은 천차만별이나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

장애인 활동지원이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 ‘**자립**’을 위한
모든 활동

일상/사회생활
포함

- 월 약 **410**시간
- 매일 약 **14**시간

서비스 이용
시간도 4배
차이

- 긴급한 사정으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천재지변의 경우
- 기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시행령 제27조)

긴급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청인에게 적절치 않습니다

- 여행 X
- 취미 X
- 직장 X

가정 내 활동만

- 신청인 2등급 -월
24일 하루 4시간씩 만
- 나머지 20시간은? NO!

하루 4시간 뿐
주말 제외

- 간병인이 아프면
- 가족이 없으면

긴급
활동지원서비스
없음

침해되는 기본권 - 자기결정권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자 - 중증 장애인

어느 서비스를 선택할 것인가

자기결정권 / 선택권 침해

가. 신청자격 [법 제5조]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 장애인
 -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각 지자체 및 관계 공단에서는 만 65세 미만인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장기요양급여 신청 전에 안내 및 홍보 강화 필요

침해되는 기본권 - 평등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이용자

VS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이용자

침해되는 기본권 - 생명권, 존엄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신청인의 일기 중 >

아직도 그녀는 천정을 보고 있다. 가끔 고개를 숙여 벽시계 시간을 확인한다.

.....

긴 시계바늘이 종일 돌아간 적도 있었다.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화장실 바닥에서 버둥거리다가 가족이나 지인들 119대원들의 도움으로 상황을 마무리하긴 하나

그 이후의 괴리감은 비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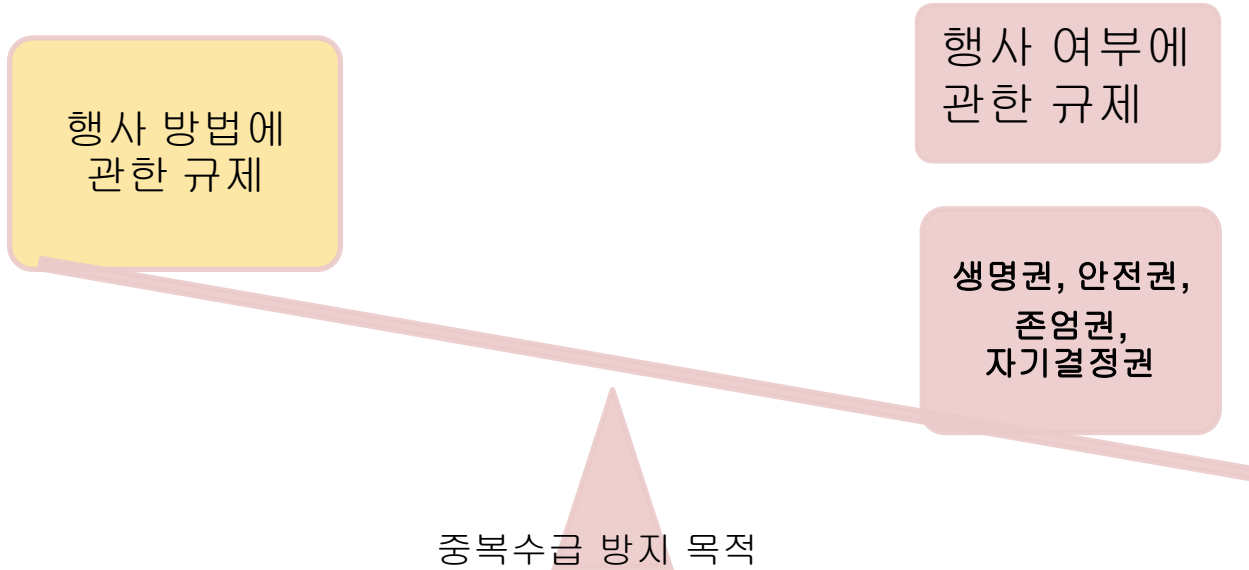
.....

엄격한 심사기준과 기본권의 상호 의존성

생명권, 존엄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근본적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기본권의 상호 의존성)

=> 비례원칙 적용

엄격 심사 기준 - 비례원칙 위반



평등권 침해 여부도 엄격한 심사척도

차별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 초래

엄격한 심사척도!

평등권 – 비례원칙 침해

- 급여 차이 : 하루 10시간 이상
- 차별 취급을 통해 달성하는 입법 목적에 피해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 극심 – 비례성 상실

자의금지 원칙에 따라도 평등권 침해

선택의 기회 없이 신청권 자체 박탈!

현저하게

합리적 이유 없이

심각한 불이익을 주어 평등 원칙에 위반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론

자기결정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존엄권, 자립하여 살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생명권).....

엄격한 심사기준: 비례원칙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은 선택권 행사 여부 자체를 봉쇄

=> **비례원칙 위반, 위헌 결정 시급!**



<https://youtu.be/NLpL4Kor9WI>



공개 변론?! 뭘 준비하지?

- 공개 변론 3일 전 : 석명준비명령!
- 미리 조직!신청할 것? 예상질문?

헌법재판소 석명준비명령



1. 인간의 존엄, 생명권, 자기결정권 등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본권이 적극적 급부청구권을 포함한다는 취지인지, 또는 국가의 보호의무에 위반하여 위와 같은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인지,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심사기준 결정에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석명준비명령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절차통제’기준 참고 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그러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심판대상조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석명준비명령



3. 자의금지원칙 적용시에도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경우를 국가가 심사를 통해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이외에 그 밖의 비합리성에 대한 주장 취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국가의 심사를 통한

구분이 현재의 장기요양인정조사,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제도 등에 의해서도 가능한지

여부 및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



헌법재판소 QNA 준비

- 고년차 : 질문을 뽑고

저년차 : 리서치

중년차: 정리 및 서면 작성

- 방어하기 가장 어려운 예상질문과 방어방법?

- 헌재 재판관이 했던 가장 첫번째 질문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1. 모두진술 - 당사자/ 이해관계인
2. 질의응답 - 당사자/이해관계인
3. 전문가증인 - 당사자/ 이해관계인
4. 질의응답 - 당사자/이해관계인
5. 최후 진술 - 당사자 측/ 이해관계인 측 (보통은 대리인이)



모두 진술과 최후 변론

1. 모두 진술 - 마지막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어야 하며 법은 그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전화를 통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로부터 반복하여 들은 말은 법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법을 말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그 속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 되물으면서 공개변론을 시작합니다.

2. 최후변론 - 동영상

<https://youtu.be/NLpL4Kor9WI>



1. 재판정에 대리인은 누가
2. 재판 방청 - 장추련
3. 당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질문?

